

보 고 사 항

□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2000. 4. 21

(화순군의회 공고 제2000-2호)

<공고내용>

- 집회일시 : 2000. 4. 29 (土) 10:00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

-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2000. 2. 3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2. 21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25호

-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 2000. 2. 23 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2. 21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28호

- 화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2000. 2. 3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2. 21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29호

-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 2000. 2. 3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2. 21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27호

-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 — 2000. 2. 3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2. 21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26호

□ 각종 의안 발의상황 보고

○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2000. 4. 21 의원발의

- 발 의 자 :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회 기 : 2000. 4. 29. ~ 5. 6 (8일간)

○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2000. 4. 21 의원발의

- 발 의 자 :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출석요구내용 : 별 첨

○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000. 4. 27 의원발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6002호 '99. 8. 31) 및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72호, '99. 12. 31)이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정례회의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개최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에 개최함.
-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함.

※ 2000. 4. 27.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4. 27 의원발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6002호 '99. 8. 31) 및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72호, '99. 12. 31)이 개정·공포되어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안 제2조)
-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을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으로 개정

※ 2000. 4. 27.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4. 20 의원발의

-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6691호 2000. 1. 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10퍼센트 인상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00. 4. 21.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4. 27 의원발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고 제척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의”로 개정
- 제척 대상의 범위를 “의원”에서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로 확대

※ 2000. 4. 27.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0. 4. 27 군수제출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예산편성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계	117,767	101,639	16,128	
일반회계	104,611	91,694	12,917	
특별회계	13,156	9,945	3,211	

※ 2000. 4. 27.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00. 4. 27 의원발의

- 주 문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활동기간 : 2000. 4. 29 ~ 5. 6 (8일간)

구성인원 : 5 명

- 제안이유

-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61억 2,800만원으로 예산안 심의는 우리군의 장기 발전 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만으로 그 내용을 성실히 파악하여 심사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 주문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제안함.

○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000. 4. 20 군수제출

- 제안이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별정직 비서 등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현행 별정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요건 구체화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할 수 있도록,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준하여 인정되는 근무상한연령 미적용

※ 2000. 4.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 2000. 4. 20 군수제출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감사청구 주민수(안 제2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규정
※ 2000. 4.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4. 20 군수제출

- 제안이유

- 지방세법령이 1999. 12. 2 국회본회의에서 일부내용이 개정되어 화순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구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함.
- 주민세 소득세할증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 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 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함.
-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에 맞게 하향 조정함.

※ 2000. 4.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 - 2000. 4. 20 군수제출

- 제안이유

- 지방세(군세)감면조례 준칙안에 의거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개정하고,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신설함.

·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개정하고,

·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237조,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감 조항을 “전액 면제한다”로 하였으며 제9조 제4호를 삭제 하였음.

·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개정하였으며,

- 제12조 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 5”로 법 적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 제14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례와 제15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례를 도심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삭제하며,
- 제22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로 하고,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로 하고,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로 하고,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로 법적용 조항을 개정함.

※ 2000. 4.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결정 의결안 - 2000. 4. 20 군수제출

－제안이유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을 과세대상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상정함.

－주요골자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에 의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부과지역을 지정 고시하되

- 우리군의 형편상 군 소재지로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지역에 대하여 1999년 현재까지 부과해오던 지역에 한해서만 부과고시지역으로 지정 고시코자 함.

※ 2000. 4.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 2000. 4. 20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화순군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배수설비의 시공(안 제4조)

- ①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함.
-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사용개시 등의 신고(안 제8조)

-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②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봄.

· 사용료(안 제12조)

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함.

② 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에 의하여 징수

·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안 제15조)

① 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

②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하며 그 사용료 완료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일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

· 점용료(안 제16조)

① 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수도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 징수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③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도의 1월중에 징수, 허가시에는 연도분 선납

④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경우는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 산정 징수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음.

· 원인자 부담금(안 제17조)

- ① 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함.
- ②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 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에 의함.
- ③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전에 징수하며 군수가 납부고지서 발부 후 15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부과액조정 신청(안 제20조)

- ①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그 처분을 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 신청할 수 있음.
- ②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 2000. 4.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4. 20 군수제출

-제안이유

- 과오납된 도로점용료 반환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안 제7조의1)

-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2000. 4. 2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기타 일반안건